의 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9. 3. 5 김인식 의원 외 6인

2. 건 명: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3. 의안요지 : 붙임참조

4. 검토의견 : 붙임참조

위 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3월 11일

대전광역시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안 문 환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9. 3. 5 김인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. 3. 10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조항 신설(안 제4조제3항) 나.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제도, 중복등록 금지 및 10분 이내 정견발표제도 명문화(안 제6조)

3. 검토의견

○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조항 신설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신설조항으로 들어가 있고, 국회법에 이미 명시되는 등 의정활동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문화하는 추세이고

-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제도, 중복등록 금지 및 정견발표 제도는
- 지난 제179회 임시회에서 의장 및 부의장 선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「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의 일부 개정으로, 의장단 선거 시 후보자 등록 제도를 신설한 바
- 의장선거에 준한 규정을 적용하여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경우, 적용기준이 모호하여
- 위원회 조례에 위원장 선출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.